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웅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웅식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1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개발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양질의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도를 통해 물재생센터로 유입되어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키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등 도시 가용수자원이나 하천용수의 배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 감면 규정은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

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안 제34조제1항제11호)

이에 따라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세입감소 발생하게 되는데 비용추계 결과 연간 약 5억원 가량이 발생되나 물재생센터로 유입되어 정화처리되는 유출지하수의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기길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